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5. 12. 4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2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(2015년 12월 4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▣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오선호

가. 제안이유

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준공예정에 따라 사업구역 내 2개의 법정동 (현석동, 신수동)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신수동 430-5번지 외 62필지 6,495㎡를 현석동으로 편입(법정동 변경)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김은모)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최광웅)으로부터 2015.4.23일 '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·면·동의 경계변경 신청서'가 우리 구에 접수되었고, 동 정비사업의 소재지는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로

면적 38,343㎡, 용적률 297.79%, 공동주택(아파트)는 8개동 773세대(지하3층, 지상35층)이며, 정비사업이 2016년 2월 준공 예정으로 동일한 정비사업 구역 내 1필지 토지가 2개의 법정동(현석동, 신수동)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신수동 63필지 6,495㎡를 현석동으로 법정동 경계를 변경하여 이를 1개의 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

- 또한, 법정동 경계변경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의견과 지역주민 및 지역 구 의원도 현석동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있어 신수동을 현석동으로 경계조정하는데 이견이 없으며,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아파트 준공이후 입주민들이 각종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의 혼용 표현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바, 준공 이전에 2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법정동 지번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
-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5. 9. 24. ~ 10.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주민의 의견은 없었고, 조합원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, 관계법령에 따라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 동일한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신수동 63필지 6,495㎡를 하나의 법정동인 현석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- 관련부서에서 유의할 사항으로는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아파트가 준공이후 법정동의 혼용 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준공 이전에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관련공부를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개편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